

의안번호	제 46 호
의결연월일	1999.

의  
결  
사  
항

사천시주차장조례증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연월일	1999. 11.

# 사천시주차장조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6

제출연월일 : '99. 9. 11  
제출자 : 사천시장

## 1. 개정이유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민영노외주차장설치 신고제가 폐지되고 업무 및 종교시설 등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규제 관련 사항을 개선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골자

- 가. 신고노외주차장의 설치기준 삭제(종전조례 제12조)
- 나. 부설주차장 일반에의 제공 조항 삭제(종전조례 제20조)
- 다. 모범납세표창수상자 공영유료주차장 1년간 무료혜택 제공(안 별표 1 제10호)
- 라. 건축물별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단순화(21개 종류→7개종류) 및 업무 시설·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시설면적 100제곱미터 당 1대를 150제곱미터당 1대로 완화(안 별표 제2호)
- 마. 과징금 처분조항 삭제 (종전조례 제23조 및 별표 4)

## 3. 법적근거

주차장법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7조

## 4. 개정조례(안) : 별첨

## 5.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99. 8. 6 - 8. 28(22일간)
- 나. 예고방법 : 신문공고
- 다. 접수된 의견 : 없음

사천시 조례 제 호

사천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주차장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20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를 제23조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제12조(신고 노의주차장의 설치기준)노 의주차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칙 제 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 기준과 구조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하도 록하여야 한다.</p> <p>제20조(부설주차장의 일반에의 제공)① 법 제1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 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부설주차 장은 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의 이용 에 제공할 부설주차장의 이용시간, 주차 요금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부설주차장 설치자가 당해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차시설배치도 및 차량 출입동선 (축적 600분의1 이상일 것)</li> <li>2. 반경 100미터이내 도로의 교통상황 을 판단할 수 있는 평면도(축적 600분 의1 이상일 것)</li> <li>3. 토지 및 건축물의 등기부 등본</li> <li>4. 주차장이용관리규정</li> </ol>	<p>〈삭제〉</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 일반이용에 관한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⑤ 관리자가 당해 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⑥ 시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설 주차장에 대한 일반의 이용에 제공을 중지 또는 폐지를 위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p>	<p>제23조 (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4와 같다.</p>
<p>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이내로 한다.</p>	<p>〈삭제〉</p>

현 행	개 정 안
<p>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p> <p>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p>	
<p><u>제24조(시행규칙) (생략)</u></p> <p>&lt;신설&gt;</p>	<p><u>제23조(시행규칙) (현행 제24조와 같음)</u></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u></p>

## (개정전)

[별표 1]

###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단위 : 원)

구분	주차요금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요금	
	기본(30분)	15분초과		주간	야간
소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가. 4월~10월 08:00~22:00  
 나. 11월~3월 09:00~21:30
3. 1구획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접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 한다.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7. 시장은 당해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 한다.
9. 800㎠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 (개정후)

[별표 1]

### 공영주차장주차요금

(단위 : 원)

구분	주차요금		1일주차권	월정기주차요금	
	기본(30분)	15분초과		주간	야간
소형	500	250	5,000	50,000	45,000
대형	1,000	500	10,000	100,000	90,000

#### - 비고 -

1. 이 주차요금표는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주차장에 적용하되, 상기금액을 상한선으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2. 주간의 시간구분은 다음과 같이 하며, 나머지 시간은 야간으로 본다.
  - 가. 4월~10월 08:00~22:00
  - 나. 11월~3월 09:00~21:30
3. 1구획은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규격을 기준으로 하되, 1구획을 초과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그 점용 구획수에 따라 징수한다.
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 1급 내지 6급의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 운전케 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5.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타기 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20퍼센트를 경감한다.
6.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차요금 미납자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외에 그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7. 시장은 당해지역의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주차시간에 따른 체증 또는 체감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8. 소형차는 전 승용자동차와 15인승이하의 승합자동차 및 2.4톤미만 화물자동차로 하고 대형차는 소형차 이외의 전 차종으로 한다.
9. 800씨씨 이하의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
10.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성실납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전)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 관련)

시 설 물		설 치 기 준
숙박시설	호텔, 관광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2객실당 1대 + 부대운동시설별 산정대수 + 기타 부대시설면적 4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의료시설	종합병원	3병상당 1대로 산정된 대수와 시설면적 120 제곱미터당 1대로 산정된 대수 중 많은 대수
	기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운동시설	골프장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	정원 15인당 1대
관람시설	기타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운동경기관람장	수용인원 100인당 1대
집회시설	예식장	시설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센터	시설면적 80제곱미터당 1대
	기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위락시설(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위락시설을 제외한다)	유 흥 음 식 점	시설면적 50제곱미터당 1대
	기 타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업무시설, 종교시설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전시시설, 운수시설, 방송·통신시설, 창고시설(냉동·냉장창고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근린생활시설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단독주택		건축면적 13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는 1대, 건축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는 1대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30제곱미터당 1대를 더한 대수(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공동주택		건축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1.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2.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에 의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 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 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면 산정한 소수점이하 두자리 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이고 전체 시설물의 면적이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다만, 당해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숙박시설중 기타 부대시설이라 합은 숙박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되는 식당·칵테일바·다실·연회실·휴게실 및 위락시설을 말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대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에 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기타건축물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후)

[별표 2]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15조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시설면적 100제곱미터당 1대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 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시설면적 150제곱미터당 1대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 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을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시설면적 200제곱미터당 1대
4.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시설면적 130제곱미터 초과 200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1대, 시설면적 200제곱미터 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30제곱미터 당 1대를 더한 대수
5. 공동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시설면적 120제곱미터당 1대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7. 기타건축물	시설면적 300제곱미터당 1대

- 비 고 -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가. 제1종 균린생활시설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나. 문화 및 접희시설중 수도원·수녀원·제설 및 식당
  -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 라. 공공용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활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의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
  -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시설물의 부지에 설치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로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소수점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30제곱미터이하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면적을 13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설치기준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이하의 수가 0.5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소수점이하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중 관광숙박시설기준등에 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대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에 자동차가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냉동·냉장창고시설은 기타건축물을 설치기준을 준용한다.

(개정전)

[별표 4]

과징금 가감기준

(제9조제1항 관련)

<금액단위 : 만원>

위반행위	위반정도	기본과징금	가·감후과징금
1. 관리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노외주차장의 공용을 개시한 때	위반시	250	240
	위반상태가 1개월이상		260
2. 관리규정에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주차요금을 받은 때	위반시	100	90
	2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50% 인상		100
	3회이상 위반 또는 주차요금의 100% 인상		110
3. 노외주차장의 구조 및 설치 기준에 위반된 때	위반시	50	45
	1회이상 시정명령 위반시		50
4. 정당한 사유없이 노외주차장의 이용을 거절할 때	위반시	50	45
	2회이상 위반시		50
5. 노외주차장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때	위반시	50	45
	2회이상 위반시		50
6. 노외주차장에 대한 시설개설 명령에 위반한 때	개선명령 1회위반시	50	45
	개선명령 2회위반시		50
7. 노외주차장의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때	위반시	50	45
	2회이상 위반시		50